

# 韓·日, 韓·中間 漁業協定과 排他的 經濟水域의 境界劃定에 關한 研究

최 낙 정\* · 박 용 섭\*\*

A Study on the Fisheries Agreements and Delimita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between Korea and China

## ABSTRACT

The history of modern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can perhaps be best understood by perceiving it as a continual conflict between two opposing, yet complementary, fundamental principles, territorial sovereignty and freedom of the high seas. Certainly at most times in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system and in most parts of the oceans, there has been a geographical area at one extreme where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was the predominant principle and the other areas at the other extreme, where the predominant principle was that of sovereignty.

## I. 序 論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할만큼 바다에 대한 중요성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海洋管轄權 화보를 위한 세계각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세기 후반에 들어 육지영토에 관한 국제분쟁은 사라져가고 있는 반면 무인도인 바위섬에 관한 領有權 분쟁을 포함한 바다에 관한 국제분쟁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 중 이웃 국가간의 海洋境界劃定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1982년 바다에 관한 세계통일 법전이라 불리는 유엔海洋法協約의 채택·발효 및 이에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법학과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법학과 교수

따른 국제관습법의 변화로 기존의 해양법질서는 일대의 변혁을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도처에서 기존의 해양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작업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유엔海洋法協約 제122조는 2개국 이상에 둘러싸이고 좁은 출구에 의하여 다른 해양에 연결되거나 전체나 대부분이 2개 이상의 沿岸國의 領海 및 排他的 經濟水域으로 둘러싸인 해역을 閉鎖海 또는 半閉鎖海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주변해역은 동해, 서해, 동중국해로 서로 연결되고,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이를 공유하고 있는 반폐쇄해에 해당한다.

또한 한반도 주변해역의 어족자원 중 많은 어종이 한국, 중국, 일본의 해역을 상호 왕래하는 경계왕래어족이며 황해의 大陸棚은 單一大陸棚으로 형성되어 있어 韓·中·일 3국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상호의존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3국은 전통적 어업국으로 한국은 세계 제10위, 중국은 세계 제1위, 일본은 세계 제2위의 어업국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육지의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원유를 비롯한 주요 천연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大陸棚의 천연자원 탐사 및 개발을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大陸棚의 석유자원개발에 성공하여 국가경제활동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해양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3국이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한 지역에 모여 있기 때문에 해양자원개발 특히 어업문제에 있어서 협력보다는 갈등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3국의 경제발전단계가 서로 상이하고 어업자원에 대한 시각이 서로 다름에 따라 이와 같은 구조적인 갈등요인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 II. 排他的 經濟水域의 意義와 國際法的 特性

전통적 의미에서의 해양법은 沿岸國의 主權的 權利가 미치는 領海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한편, 해양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해의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여 바다를 가급적 모든 국가가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남겨 두고자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領海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3해리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한 12 해리 이상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沿岸國의 漁業專管水域도 領海의 범위와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이 沿岸國인 많은 신생독립국이 탄생하게 되고 이들 국가들이 무역항로의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어업자원을 비롯한 무한한 자원의 보고로서의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沿岸國의 海洋管轄權을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부 해양선진국의 지지를 받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대타협의 산물로 12해리의 領海制度의 確立, 通過通行權, 大陸棚, 排他的 經濟水域, 公海상의 해저광물자원에 관한 人類共同의 遺產 등 새로운 개념들이 해양법질서의 새로운 죽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존의 공해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독자적 해역인 200해리의 排他的 經濟水域의 등장이다. 유엔海洋法協約에 따르면 沿岸國은 자국의 排他的 經濟水域 내에서 主權的 權利를 가지며 沿岸國의 자유재량으로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종어획량과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정하고 잉여분이 있을 경우 자국이 정한 조건하에서 다른 국가의 입장에 허용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에 따라 沿岸國의 排他的 經濟水域은 그 면적상으로는 전체 바다의 약 30% 정도이지만 상업적으로 어획 가능한 어족의 약 90%가 이 해역에 분포하고 있어 사실상 주요생물자원에 대한 관리권이 沿岸國의 책임 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생태계를 비롯한 해양환경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완비되지 않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沿岸國이 독자적으로 합리적인 어족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排他的 經濟水域의 등장으로 인하여 어족자원의 관리를 沿岸國의 책임으로 돌린 것은 생태계의 합리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므로 생태계의 합리적인 관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자원에 대한 국제적인 관리체제를 확고히 확립함은 물론 境界往來魚種 등에 관하여 지역간의 협의체 구축을 통한 공동관리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III. 排他的 經濟水域의 境界劃定에 關한 原則

大陸棚 및 200해리의 排他的 經濟水域이 등장한 이후 보다 넓은 海洋管轄權을 확보하고자 하는 沿岸國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됨에 따라 서로 마주보거나 인접한 국가간의 海洋境界劃定問題가 중대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웃국간의 海洋境界劃定을 규율하는 법규와 원칙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58년 제네바협약에서 大陸棚의 境界劃定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1982년 유엔海洋法協約에서는 排他的 經濟水域과 大陸棚의 境界劃定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69년 北海大陸棚 사건의 판결을 시작으로 국제사법재판소는 海洋境界劃定에 대한 원칙을 밝혀오고 있다.

이와 같은 海洋境界劃定에 관한 국제협약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각종 판결을 종합적

으로 분석해 보면 이웃국가간의 해양경계는 당사국간에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자는 의사를 갖고 신의성실에 입각한 교섭을 통한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합의에 이르지 못 할 경우에는 적절한 권한을 가진 제3자에 의해 결정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해양경계는衡平한 기준의 적용과衡平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분쟁지역의 지리적 형태와 다른 관련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衡平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200해리排他的經濟水域의 등장 이전에는大陸棚의 자연연장이론에 의해 해저의 지질학 또는 지형적 요소가 중시되었다. 그러나 200해리排他的經濟水域의 등장 이후 특히 서로 마주보는 국가간에 양국의 연안으로부터의 해역의 길이가 400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연안으로부터의 거리가 결정적인 고려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일단 양국간 중간선을 취하여 이 선이衡平의 원칙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관련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이衡平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실제로 여러 국가간의海洋境界劃定에 적용되어온 제네바협약 제6조의合意/等距離/特殊狀況의原則의 재 부상을 의미한다.

#### IV. 韓·日漁業協定과 排他的經濟水域의 境界劃定

한국과 일본은 일본의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의 일방적인 파기통보에 따른 무협정 상태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극한 상황에 몰려서야 1998년 9월 새로운 어업협정타결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동해에서 연안으로부터 35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이 수역 내에서 양국의 전통적 조업실적을 상호 보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35해리 바깥 수역은 동경 135도 30분을 동쪽한계선으로, 동경 131도 40분을 서쪽 한계선으로 하여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독도주변수역이 중간수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청탁문제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협정은 어업문제에 국한되며, 기존의 영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독도의 지위에는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된다.

#### V. 韓·中漁業協定과 排他的經濟水域의 境界劃定

한국과 중국간에는 1992년 국교가 수립된 이후 어업협정 체결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위한 회담이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1998년 11월 잠정적인 어업협정이 타결되었다. 양국은 먼저 가상의 중간선으로부터 양국간 면적이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잠정조치 수역을 먼저 설정하여 직선기선 사용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상호입어를 보장하지 않는 대신 과도수역제도를 도입하였다. 양국간 협정에 따르면 과도수역은 협정 발효 후 4년이 경과하면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자동적으로 편입된다. 또한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에서는 어족자원의 철저한 공동관리가 시행된다.

## V. 結論

排他的 經濟水域제도의 등장으로 한반도 주변해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롭게 대두될 어업질서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沿岸國間의 안정된 어업질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구 질서보다 나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취지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沿岸國들은 자국의 排他的 經濟水域에서 어업자원을 배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하여 타국의 입어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반폐쇄해인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자국의 단기적인 이익과 대화 만을 위하여 排他的 經濟水域제도를 강직적으로 운용할 경우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으로 韓·日 및 韓·中간 排他的 經濟水域의 境界劃定을 위한 협상에서의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국제해양법상의 원칙과 한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간, 한국과 중국간 排他的 經濟水域의 境界劃定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이들 국가간에는 排他的 經濟水域의 境界劃定의 원칙적용 및 이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排他的 經濟水域의 境界劃定은 뒤로 미루고 우선 잠정적인 漁業協定이 타결되었으나 자칫 잘못하면 이와 같은 잠정적인 조치가 영구화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반도 주변해역은 排他的 經濟水域의 확정없이 어업수역, 大陸棚 등의 관할해역이 혼재하게 되어 그 효율적인 관리상 어려움이 존재함은 물론 국가간의 管轄權분쟁이 계속하여 발생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둘째, 이들 국가간의 排他的 經濟水域의 境界劃定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은 等距離原則이 최소한 우선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韓·中·일 세나라 모두가 유엔海洋法協約에 가입하였으므로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동 협약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서로 마주보는 국가간의 排他的 經濟水域의 境界劃定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우 애매 모호하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비록 이 규정에 衡平의 원칙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

지만 海洋境界劃定은 국제관습법에 의한 衡平의 원칙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에서 밝힌 국제관습법상의 기본 원칙은 서로 마주보는 국가간의 排他的 經濟水域의 境界劃定은 衡平의 기준의 적용과 衡平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1985년 리비아와 몰타간 대륙붕사건 및 1993년 그린랜드와 얀 마엔간 해양경계 획정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서로 마주보는 국가간의 해역의 길이가 400해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지질학 또는 지형학적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거리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이 경우 等距離 原則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韓·日, 韓·中간 排他的 經濟水域의 境界劃定에 있어 衡平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하여 먼저 관계국간의 중간선을 취한 후 이를 변경할 관련상황이 존재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韓·日간에는 남부大陸棚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2028년까지 유효함으로 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衡平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되며, 韩·中간에는 중간선을 변경해야 할 특수상황이나 관련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된다.

셋째, 국제법상 적합하지 않는 중일 양국의 直線基線의 설정은 인정될 수 없다. 중일 양국이 설정한 海洋境界劃定의 기준이 되는 直線基線은 많은 경우에 유엔海洋法協約이 규정하고 있는 直線基線의 설정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排他的 經濟水域의 경계를 획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무시하고 해안으로부터 중간선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945

넷째, 韩·日간 排他的 經濟水域의 境界劃定에 있어 독도 주변해역이 한국의 수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독도가 과연 해양법상 排他的 經濟水域을 가질 수 있는 섬이냐 하는 문제는 관계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그 판단을 유보하여 독도로부터 기점을 삼지 않더라도 최소한 독도의 주변해역이 우리나라의 排他的 經濟水域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韩·日 漁業協定의 내용과 관련하여 양국은 기본적으로 양국 해안으로부터 35해리의 排他的 經濟水域을 설정하고, 그 외부해역을 中間水域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독도의 현재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존중한다는 양측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주변 12해리는 한국의 領海로 인정한다고는 하나, 일본도 공식적으로 독도는 자국의 영토이며 독도주변 12해리는 자국의 領海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간 排他的 經濟水域의 境界劃定시에는 이를 명확히 하여 독도의 주변해역이 우리나라의 排他的 經濟水域에 포함되도록 교섭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1997년 中·日간 체결된 漁業協定으로 설정된 동중국해의 暫定措置水域이 우리나라의 200해리 排他的 經濟水域을 침범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韩·中·일 3국간 협의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던지, 최소한 暫定措置水域 내 우리 어선의 입어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비록 한반도 주변해역에 排他的 經濟水域의 시대가 열렸지만 이 해역은 반폐쇄해이며 대부분의 어족들은 境界往來魚族이므로 韓·中·일 삼국간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境界劃定을 통하여 자국수역을 沿岸國들이 배타적으로 관리하는 채계 및 양자간의 협력만으로는 어업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해역의 沿岸國 모두가 참여하는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국제기구를 설립하여 다자간 협력이 이루어질 때에만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排他的 經濟水域의 도입이 한반도 주변국가간의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되며, 이 해역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효율적 어업관리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3국의 친밀한 노력과 협력이 요구된다.

## 參 考 文 獻

### 가. 國內 文獻

#### 1. 單行本

- 權文相 외, 「排他的 經濟水域 宣布와 廣域管理體制 構築에 關한 研究(II)」, 서울 : 海洋水產開發院, 1997.
- 金達中, 「韓國과 海路安保」, 서울 : 法文社, 1998.
- 金明基, 「獨島와 國際法」, 서울 : 化學社, 1987.
- 金榮球, 「現代海洋法論」, 서울 : 아세아社, 1988.
- 朴鐘聲, 「海洋法研究」, 서울 : 檳國大學校 出版部, 1978.
- \_\_\_\_\_, 「韓國의 領海」, 서울 : 法文社, 1985.
- 朴椿浩·柳炳華, 「海洋法」, 서울 : 民音社, 1986
- 裴珍수, 「세계의 도서분쟁과 독도 시나리오」, 서울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1997.
- 慎鍊慶, 「獨島의 民族領土史 研究」, 서울 : 知識產業社, 1996.
- 柳炳華, 「東北亞地域과 海洋法」, 서울 : 賞成社, 1991.
- 池鐵根, 「韓·日海洋紛爭史」, 서울 : 한국수산신문사, 1989.
- 崔宗和, 「國際海洋法講義」, 부산 : 太和出版社, 1998.
- 大韓民國政府, 「韓·日 會談 白書」, 1965.
- 外務部, 「東北亞諸國의 海洋法令」, 1996.
- \_\_\_\_\_, 「濟州道와 北海島의 周邊水域 操業問題」, 1981.
- \_\_\_\_\_, 「韓·日 大陸棚共同開發 資料集 第1卷」, 1979.

水產廳, 「1994年度 水產業 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 1994.

## 2. 論文 및 其他

- 강영훈, “한국-일본간 해양문제”, 「해양전략연구소」, 연구총서 97-01호, 1997년.
- 權文相 · 鄭聖哲, “黃 · 東支那海의 魚族資源管理에 관한 共同協力 方案”, 「海洋政策研究」(韓國海洋研究所), 제5권 제1호(1990년 여름)
- 金明圭, “海洋法의 變遷過程에 관한 研究”, 「國際法論叢」, 제23권 1, 2호 병합, 1978년 12월.
- 金明基, “國際法上 獨島 領有權과 韓 · 日 經濟水域”, 「國際問題」, 1996년 4월.
- 金錫鉉, “主要 島嶼紛爭 事例”, 「國際法評論」, 장간호, 1996년.
- 金榮球, “동아시아 周邊 海域의 海洋境界劃定問題”, 嶺南國際法學會 共同主催 學術會議 發表論文, 韓國海洋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1997.
- \_\_\_\_\_, “東海에 있어서 韓 · 日間의 EEZ 境界劃定에 관관한 海洋法協約 第121條 3項의 解釋과 適用”, 「서울 國際法研究」, 3권 1호, 1996.
- 金永鎮, “EEZ-한 · 중 · 일 어업협상의 문제점과 대책”, 「제185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집」, 97-2호, 1997.
- 金燦奎, “UN 海洋法協約과 韓 · 中國間 大陸棚境界劃定”, 「海洋政策動向」, 제5호, 1985.
- \_\_\_\_\_, “中國의 領海法制定과 동아시아 海洋紛爭의 可能性”, 「國際問題」, 1992년 11월호.
- \_\_\_\_\_, “排他的經濟水域의 設定과 獨島”, 「國際問題」, 1996년 5월.
- 金顯洙, “獨島의 海洋法上 地位”, 「海洋戰略」, 제93호, 1996년 12월.
- 盧明濬, “韓 · 中共間의 漁業關係 및 大陸棚의 法的 地位”, 「國際法學會論叢」, 제23권 제1, 2호 합병호, 1978. 12.
- 文正式, “海洋境界劃定에 있어서 海洋法上 島嶼의 地位”, 「海洋政策研究」, 제1권 제1호, 1986년 겨울.
- 朴鍾聲, “經濟水域基線으로서의 獨島에 관한 研究”, 「國際法學會論叢」, 제23권 1호 · 2호 합병호, 1978.
- \_\_\_\_\_, “第3次 海洋法會議의 歷史的 意義”, 「國際法學會論叢」, 제27권 제1호, 1982년 9월.
- \_\_\_\_\_, “中共의 海洋管轄權”, 「中蘇研究」, 제7권 제4호, 1983.
- 朴椿浩, “韓國의 大陸棚境界問題”, 「韓國海法學會紙」, 제6권 제1호, 1984.
- \_\_\_\_\_, “韓半島 周邊의 海洋漁業環境”, 「水產界」, 1993년 1, 2월호.
- 朴喜權, “韓 · 中, 韓 · 日 漁業協商의 現況과 展望”, 韓國海路研究會 主催 세미나 發表

資料, 1997. 5. 1.

- 白珍鉉, “東北亞地域의 漁業秩序와 國際海洋法”, 韓國海路研究會 主催 세미나 發表資料, 1997. 5. 1.
- \_\_\_\_\_, “韓國-中國間의 海洋問題”, 「海洋戰略研究所 研究叢書」, 97-01호, 1997.
- \_\_\_\_\_, “海洋境界劃定原則의 變遷과 韓半島 周邊海域의 境界問題”, 「海洋政策研究」, 제6권 1호, 1991.
- 李瑞恒, “韓·日 漁業協定 20年 評價-新 海洋法 確立과 관연하여”, 「國際法學會論叢」, 제30권 제2호, 1985.
- 李錫龍, “우리나라의 海洋境界劃定에 關한 考察”, 「海洋政策研究」, 제4권 1호, 1989년 봄.
- 李創偉, “經濟水域實施와 관연된 法的 問題 - 韓半島 周邊海域의 經濟水域制度 現況을 中心으로”, 「서울國際法研究」, 제2권 1호, 1995년
- 崔宗和, “韓·日漁業協定 改定問題에 關한 基礎研究”, 「水產海洋研究」, 제9권 제2호, 1997.
- \_\_\_\_\_, “經濟水域時代의 漁業管理制度 改善方案”, 「國際法學會論叢」, 제42권 제1호, 1997.
- 海洋水產部, '96 水產物 輸出入 動向, 1997. 3.
- \_\_\_\_\_, “한·일 어업협정파기에 따른 어업대책”, 대어업인 설명회자료, 1998. 2.
- \_\_\_\_\_, 1998年 主要業務報告, 1998.

#### 나. 國外 文獻

##### 1. 단행본

- Akehurst, Michael, *A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1982.
- Bowett, D. W., *The Legal Regime of Islands in International Law*, New York : Oceana Publication Inc., 1979.
- Brown, E. D., *Sea bed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and Law of the Sea, Vol. I, The Areas within National Jurisdiction*, Oxford, Graham & Trotman, 1984.
- \_\_\_\_\_, *The Legal Regime of Hydrospace*, London, Stevens & Sons, 1971.
- \_\_\_\_\_,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ume I · II*, Aldershot : Dartmouth, 1994.
- Brownlie, Ian, *Principles of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4th ed., Oxford :

- Clarendon Press, 1990.
- Burke, W. T., *The New International Law of Fisheries ; UNCLOS 1982 and Beyond*, Oxford : Clarendon Press, 1994.
- Charney, J. I., & Alexander, L. M., *International Maritime Boundaries, Vol. I · II*, Dordrecht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3.
- Churchill, R. R., *EEC Fisheries Law*, 1987.
- Churchill, R. R. and Lowe, A. V., *The Law of the Sea*, Manchester : University Press, 1983.
- Cymmons, *The Maritime Zones of Islands on International Law*, Dordrecht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79.
- Dahmani, Mohamed, *The Fisheries Regime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Dordrecht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7.
- Fawcett, J. E. S. & Parry, Audrey, *Law and International Resources Conflicts*, London :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87.
- Greenfield, Jeannette, *China's Practice in the Law of the Sea*, Oxford, Clarendon Press, 1992.
- Hey, Ellen, *The Regime of the Exploitation of Transboundary Marine Fisheries Resources*, Dordrecht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9.
- Jennings Robert, *The Exclusive Economic Zon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Juda, Lawrence, *International Law and Ocean Management*,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1996.
- Kwiatkowska, Barbara, *The 200-Mile Exclusive Economic Zone in the Law of the Sea*, Dordrecht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9.
- Knight, H. G., *The Future of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St. Paul, Cust Publisers Co, 1975.
- \_\_\_\_\_, *Managing the Sea Living Resources*, Lexington : Lexington Books, 1977.
- Muller, D. G., *China as a Maritime Power*, 1983.
- Nadan and Rosenne(ed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s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Dordrecht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3.
- Nordquist, M. H., and Park, Choon-ho(eds.), *Report of the US Delegation to the Third UN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Law of the Sea Institute,

- University of Hawaii, 1983.
- O'Connell, D. P.,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 I · II*, Oxford : Clarendon Press, 1982.
- Orrego Vicuna, Francisco, *The Exclusive Economic Zone*,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Papadakis, N., *The International Regime of Artificial Islands*, 1977
- Rothschild, Brian(ed.), *Global Fisheries: Perspectives for the 1980s*, New York : Springer Verlag, 1983.
- Symmons, C. R., *The Maritime Zones of Islands in International Law*, Hague, 1979.
- Williams, G. O., *The Bering Sea fur Seal Dispute*, Eugene, Alaska : Maritime Publication, 1984.
- 高林秀雄, 「國連海洋法條約の成果と課題」, 東京:東信堂, 1996.
- 綠間榮, 「海洋海域開發と國際法」, 東京:近代文藝社, 1995.

## 2. 논문 기타

- R. Barston, R.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traddling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Marine Policy* Vol. 19, No. 1, Jan. 1995.
- Bingham, J., "Report on the international Law of Pacific Coast Fisherie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38.
- Bishop, W. W., "The 1958 Geneva Convention on Fishing and the Conserv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 *62 Colum L.R.* 1206, 1962.
- Brown, E. D., "The exclusive Economic Zone: Criteria and Machinery for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Conflict between Different Users of the EEZ", *Marine Policy Management*, 1977.
- Burke, W. T., "US Fishery Management and the Law of the Sea", *76 A.J.I.L.*(1982).
- \_\_\_\_\_, "Anadromous Species and the New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22 O.D.I.L.*, 1991.
- Caflisch, L., "The Fishing Rights of Land-Locked and Geographically Disadvantaged Stat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n B. Conforti(ed.) *La zona económica exclusiva*, 1983.

- Charney, J. I., "Ocean Boundaries between Nations: A Theory for Progress", *A.J.I.L.*, Vol. 78, 1984.
- Chen, David, "Baselines for Territorial Waters", *Window*, May 24 1996.
- Churchill, R. R., "Fisheries Issues i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Marine Policy* Vol. 17 No. 1 Jan. 1993.
- Couper, A. D. and Smith, H. D. "The Development of Fisherman-based Policies", *Marine Policy* Vol. 21 No. 1, Jan. 1997.
- Court of Arbitration, "The United Kingdom and Northern Ireland and French Republic,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Decision of 30 June 1977; and Decision of 14 March 1978, H.M.S.O., 1978, Cmnd 7478.
- Du, Bilan, "China's Strategy for Development of its Maritime Living Resources in the EEZ", Kurabayashi and Miles(eds), *The New Law of the Sea in the 1990's: A Framework for Further International Cooperation* 1992.
- Garcia, Gulland, and Miles, "The New Law of the Sea, and Access to Surplus Fish Resources", *10 Marine Policy*, July 1986.
- Gojdie, L. F. 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s Natural Prolongation and Continental Shelf Problem of Islands", *IV Netherlands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973.
- Grotius, Hugo, "Mare Liberum", 1609 (English Translation by Magoffin, 1916).
- Hodgson, R. D., Islands: "Normal and Special Circumstances", J. K. Gamble and G. Pontecorvo(eds.), *Law of the Sea: Emerging Regime of Oceans*, 1974.
- Hodgson, R. D. and Smith, R. W., "The Informal Single Text(Committee II) : A Geographical Perspective", *3 O.D.I.L.*, 1976.
- Holt, S., "Whale Mining, Whale Saving", *9 Marine Policy*, 1985.
- Hsu, R. T. S., "A Rational Approach to Maritime Delimitation", *13 O.D.I.L.*, 1983.
- I.C.J, "North Sea Continental Shelf", Judgment, *I.C.J. Reports*, 1969.
- \_\_\_\_\_, "Continental Shelf(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Judgment, *I.C.J. Reports*, 1982.
- \_\_\_\_\_,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 Area", Judgment, *I.C.J. Reports*, 1984.
- \_\_\_\_\_,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Judgment, *I.C.J. Reports*, 1985.
- \_\_\_\_\_,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 Judgment, *I.C.J. Reports*, 1993.
- Langeraar, "Wijnand, Delimitation of Continental Shelf Areas: A New Approach", *Journal of Maritime Law of Commerce*, Vol. 17 No. 3 July 1966.
- Mcmillan, D. J., "The Extent of the Continental Shelf", *9 Marine Policy*, 1985.
- Miles, E. L. and Burke, W. T., "Pressures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982 Arising from New Fisheries Conflicts: The Problem of Straddling Stocks", *20 O.D.I.L.*, 1989.
- Moore, G., "Principles of Fisheries Legislation under the New Law of the Sea". *FAO Fisheries Law Advisory Programme*, Circular No. 5, 1986.
- Oda, Shigeru, "International Control of Sea Resources, Introduction", Dordrecht : Martinus Nijhoff, 1989.
- Oxman, B. H.,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The 1976 New York Sessions", *A.J.I.L.*, Vol. 71, 1977.,
- Paik, Jin Hyun, "Prospects for the EEZ in Northeast Asia: Opportunities and Problems". Dalchoong Kim(eds.), Exploring Maritime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1995.
- Park, Choon Ho, "Fishing under Troubled Waters : The Northeast Asia Fisheries Controversy", *O.D.I.L.*, Vol. 12 No. 2, 1974.
- P.C.A, "The North Atlantic Coast Fisheries",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1910, *11 R.I.A.A.*, 167,
- Punal, Antonio Martinez, The Rights of Land Locked and Geographically Disadvantaged States in Exclusive Economic Zone",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 23 No. 3. July 1992.
- Richardson, E. L., "Power, Mobility, and Law of the Sea", *58 Foreign Aff.*, 1980.
- Thébaud, Olivier, "Transboundary Marine Fisheries Management; Recent Developments and Elements of Analysis". *Marine Policy*, Vol. 21, No.1, Jan. 1997.
- U.K., Treaty Series No. 71(1965), Cmnd. 2757 and No.24(1967), Cmnd. 3254.
- U.N., Doc. A/CONF. 19/8(1960).
- \_\_\_\_\_, Maltese Note Verbale of 17 Aug. 1967 to UN Secretary-General(UN Doc. A/6695, 18 Aug. 1967).
- \_\_\_\_\_, Doc. FIRM/R236 Report of the ACMRR Working Party on the Scientific Basis of Determining Management Measures, *F.A.O. Fisheries Report*, No. 236,

1980.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Supplement, Law of the Sea Convention, *Letters of Transmittal and Submittal and Commentary*, Vol. 6, February 1995.

\_\_\_\_\_, "Straight Baseline Claim : China, *Limit in the Seas No 117*", July 9, 1996, Office of Ocean Affairs Bureau of Ocean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Scientific Affairs.

Young, R., "Equitable Solutions for Offshore Boundaries: the 1958 Saudi Arabia-Iran Agreement", 64 *A.J.I.L.*, 1970.

